

1. 개정이유

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82호, 2026.6.9. 공포, 2026.12.10. 시행)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(안 제40조의2제1항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, 그 밖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나.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(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환경성적표지인증 지원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
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 컨설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컨설팅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
2. 그 밖에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지원신청의 기간, 지원방법, 지원금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환경성적표지인증 컨설팅 지원신청서

기업명 (사업자등록증 상)				법인등록번호			
대표자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
기업구분	[] 중소기업 [] 중견기업 [] 기 타			담당자	성명/직책	(성명)	(직책)
					전화번호		
					전자우편		
주소	우편번호()						
	인증번호	인증 구분	세부 유형 (최초, 파생, 갱신)	인증제품명	인증제품분야 (일반소비재, 생산재, 에너지사용 등)	인증취득일	컨설팅 실소요비용 (세액제외)
1	2025-000	저탄소 제품/ 환경성적 표지	최초	000	생산재	2025-00-0 0	원
2							원
계							0원

지원사업 기 참여여부	과거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여부	
	☐ 없음	☐ 있음 (참여년도: 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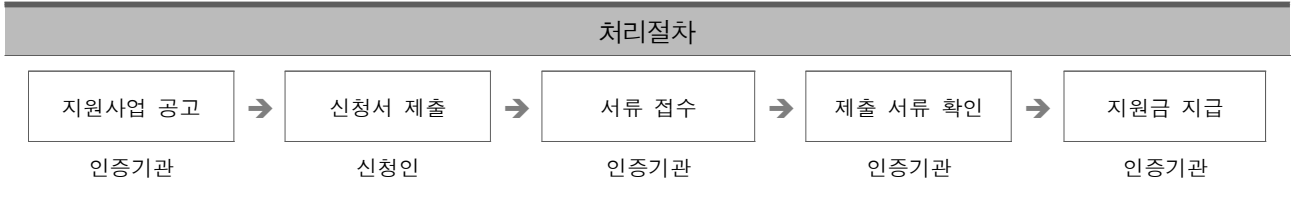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4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1. 컨설팅 비용 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카드전표, 이체확인증 등) 2. 그 밖에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-----	--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0조의2(환경성적표지인증 지원)</u>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환경성적표지인증 컨설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컨설팅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2. 그 밖에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원신청의 기간, 지원방법, 지원금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